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8가합5845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이효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4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기윤도, 김현지, 이우송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340,326원 및 그중396,172,59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55,999,540원에 대하여는 2018. 9.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12.

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피고 B은 2019. 6. 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6. 1. 접수 제864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6. 5. 접수 제22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E, F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18. 6. 1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D, E은 각 29,223,600원, 피고 F은 25,048,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E, F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340,326원 및 그중 396,172,59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55,999,540원에 대하여는 2018. 9.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D, E은 각 35,000,000원, 피고 F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G은행 및 H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1~3차 신용보증’). 피고 회사는 1~3차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 사건 각 대출’). 1~3차 신용보증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대출 일자와 대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변경 보증기간)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17. 4. 20.	255,000,000	2018. 4. 19. (2019. 4. 19.)	기업일반자금대출	G 은행	2017. 4. 28.	300,000,000
2차보증	2017. 8. 24.	100,000,000	2018. 8. 23.	기업본보증서대출	H 은행	2017. 8. 25.	125,000,000
3차보증	2017. 8. 24.	292,000,000	2018. 8. 23.	기업본보증서대출	H 은행	2017. 8. 25.	365,000,000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1~3차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8. 6. 16.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9. 6. H은행에 대하여 2, 3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396,172,597원[(2차 신용보증 대출원금 100,000,000원 + 이자 1,064,437원) + (3차 신용보증 대출원금 292,000,000원 + 이자 3,108,160원)]을, 2018. 9. 14. G은행에 대하여 1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257,945,508원(대출원금 255,000,000원 + 이자 2,945,50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 3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396,172,597원, 1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 255,999,540원, 위약금 167,530원, 확정손해금 659원 합계 652,340,326원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가 1~3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8. 9. 6. 기준으로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 처분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6. 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6. 1. 접수 제86427호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6. 5. 접수 제22834호로 각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회사의 재산 처분

피고 회사는 2018. 6. 11. 피고 D, E, F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35,000,000원에, 피고 E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35,000,000원에, 피고 F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30,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피고 D, E, F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뒤, 2018. 9. 7.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C : 자백간주 ○ 피고 B : 공시송달 ○ 피고 D, E, F : 갑 제1~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 652,340,326원 및 그중 396,172,59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8. 9. 6.부터, 255,999,54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8. 9. 14.부터 피고 회사는 그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그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1~3차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한 지 5일만인 2018. 6. 16.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의 채무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발생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장,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 J의 각 주식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무렵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

	재 산 내 역	가 액 (원)	비 고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47,900,000	
2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65,000,000	
3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31,500,000	
4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26,500,000	
5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20,430,000	
6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18,830,000	
7	서울 용산구 K	630,000,000	
8	주식회사 L 주식 71,000주	83,496,000	1주당 1,176원
	합 계	923,656,000	

2)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

채 무 내 용	금 액(원)
M은행에 대한 채무	123,000,000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86,000,000
N은행에 대한 채무	3,514,000,000
O은행에 대한 채무	1,209,000,000
G은행에 대한 채무	915,000,000
H은행에 대한 채무	724,000,000
P은행에 대한 채무	1,000,000
Q에 대한 채무	2,863,000,000
N신용카드에 대한 채무	7,000,000
R에 대한 채무	80,000,000
S에 대한 채무	25,000,000
T에 대한 채무	15,000,000
U에 대한 채무	10,000,000
V에 대한 채무	21,000,000
W에 대한 채무	39,000,000
X은행에 대한 채무	193,000,000
Y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3,887,000,000
Z에 대한 채무	70,000,00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0,000,000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26,000,000
신용보증기금(원고)에 대한 채무	997,000,000
합 계	15,105,000,000

3) 채무초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 E, F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 D, E, F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사 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2018. 5. 말경 소개받은 지 며칠 만에, 세무사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급하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대금 지급에 이른 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후 불과 5일 후에 피고 회사가 채무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들이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 자체를 피고 회사에 다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2018. 9. 7. 기준으로 1주당 1,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D, E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29,223,600원(= 1,176원 × 24,850주), 피고 F은 25,048,800원(= 1,176원 × 21,300주)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 B, D, E, F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오승이, 판사 송승훈

별지1목록

부동산의 표시

-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야 447㎡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야 1750㎡
(공유자 지분 1750분의 49)
(위 소유자 , 수원지방법원 용인동기소 관할)
- 다. 경상남도 거제시 임야 3799㎡
(위 소유자 , 창원지방법원 거제동기소 관할)

별지2목록

주식의 표시

- 가.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다.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라.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비상장주식)
 마. 발행주식 수 : 71,000주

양수양도한 주식

- | | | |
|-------|----------------------|----------------|
| 1. 피고 | <input type="text"/> | 위 주식 중 24,850주 |
| 2. 피고 | <input type="text"/> | 위 주식 중 24,850주 |
| 3. 피고 | <input type="text"/> | 위 주식 중 21,300주 |